

『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11월 1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2월 5일

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유 영 명

나. 제안이유

- 송정 119안전센터 시설 노후화 및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전 신축에 필요한 대체 부지를 지원하고 송정동주민센터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.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공공시설물(청사, 관사등)축조가 가능함으로 공유재산에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송정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동의
 - 위 치 : 구미시 송정동 492 (형곡구획정리지구 체비지)
 - 규 모 : 부지 833.4㎡, 건축연면적 726㎡(지상2층)
 - 사업기간 : 2014. 1 ~ 2014. 12
 - 사 업 비 : 1,320백만원(건축비)

라. 참고사항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11호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성 애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현 송정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검토결과

- 본 동의안은
송정119안전센터의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전 신축에 필요한 대체 부지를 지원하고 송정동주민센터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
- 사유지인 구미시 송정동 492 번지, 부지 833.4㎡에 연면적 726㎡, 지상2층 규모의 송정119안전센터를 신축하여 열악한 소방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소방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